[별표 3] <개정 2010.12.13>

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(제106조제2항 관련)

용도	규모(연멱적, 세대 또는 동)
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 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수련 시설	2천제곱미터 이상
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관광 휴게시설, 방송통신시설	3천제곱미터 이상
종교시설	_
노유자시설	5백제곱미터 이상
공동주택(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 당한다)	300세대 이상(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)
단독주택(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, 단독주택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)	50동 이상
그 밖의 용도	1천제곱미터 이상

비고

- 1.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
- 2.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

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 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